

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7월 30일

자치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7월 21일, 검단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7월 21일 위원회 회부

다. 상 정 일 자: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

제4차 자치경제위원회(2026. 7. 30.) 상정,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【제안 설명자: 기획예산실장】

1) 제안이유

-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행정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기 위함

2) 주요골자

- 개정 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
- 주요 내용: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(안 제3조)
- 입법예고(2026. 7. 8. ~ 2026. 7. 20.) 결과: 1건의 의견 제출(한규창 의원)

- 조례 개정의 공익성·정당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철회 요청 의견 접수
- 조례·규칙심의회: 원안 가결

3. 사무과장(직무대리) 검토보고 요지

【사무과장(직무대리) : 정홍선】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에 따라 의회사무과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, 검단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검단구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상위법령에 위배된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입안으로 판단되나, 집행기관 의견제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, 인력수급 방안, 조직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“원안 검토” 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으며, 표결로 진행함

5. 토론 요지 : ‘원안의결’ 동의

6. 심사 결과 : 【원안 가결】

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7월 30일

자치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7월 21일, 검단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7월 21일 위원회 회부

다. 상 정 일 자: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

제4차 자치경제위원회(2026. 7. 30.) 상정,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【제안 설명자: 기획예산실장】

1) 제안이유

- 2026년 제1차 검단구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) 주요골자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주요내용: 부서 신설 - 혁신전략실(안 제3조)
기능 조정 - 기획예산실 일부 기능 조정(안 제5조 및 제6조)
- 입법예고(2026. 7. 8. ~ 2026. 7. 20.) 결과: 특이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동의

3. 사무과장(직무대리) 검토보고 요지

【사무과장(직무대리) : 정홍선】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

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부합하며,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, 신설되는 혁신전략실과 기존 기획예산실 간 사무 경계의 명확화, 그리고 신설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“**원안 검토**” 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특이 사항 없음.

5. 토론 요지 : ‘원안의결’ 동의

6. 심사 결과 : 【원안 가결】

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7월 30일

자치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7월 21일, 검단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7월 21일 위원회 회부

다. 상 정 일 자: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

제4차 자치경제위원회(2026. 7. 30.) 상정,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【제안 설명자: 기획예산실장】

1) 제안이유

- ‘혁신전략실’ 신설에 따른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) 주요골자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24조
-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 3): 일반직 5급 49명 → 50명(1명 증원),
일반직 6급 이하 784명 → 783명(1명 감원)
- 입법예고(2026. 7. 8. ~ 2026. 7. 20.) 결과: 특이사항 없음

3. 사무과장(직무대리) 검토보고 요지

【사무과장(직무대리) : 정홍선】

- 본 개정안은 혁신전략실 신설에 따라 총 정원의 증감 없이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

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·제24조에 따른 정원관리 절차에 부합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, 향후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 계획이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“원안 검토” 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특이 사항 없음.

5. 토론 요지 : ‘원안의결’ 동의

6. 심사 결과 : 【원안 가결】

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6년 7월 30일
자치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7월 16일, 검단구청장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7월 20일 위원회 회부
다. 상 정 일 자: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
제4차 자치경제위원회(2026. 7. 30.) 상정,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【제안 설명자: 치매보건과장】

1) 제안이유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(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25-2, 검단구보건소 3층, 면적 216㎡)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
- 전문인력 및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) 주요골자

- 위탁 근거
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

-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, 제5조
- 위탁 대상: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(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25-2, 검단구보건소 3층)
- 시설 현황: 면적 216㎡, 종사자 13명
- 위탁 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
- 위탁운영 주요 내용
 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· 관리
 -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
 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
 -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 등
- 위탁 방법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

3. 사무과장(직무대리) 검토보고 요지

【사무과장(직무대리) : 정홍선】

-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, 정신건강 및 위기개입 ·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5개년 총 45억 7,900만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구비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수탁기관 선정 이후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 · 시비 확보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·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“**원안 검토**” 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특이 사항 없음.

5. 토론 요지 : ‘원안의결’ 동의

6. 심사 결과 : 【원안 가결】